

중대재해 사례

전지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

< 사고개요 >

2019.06.00., 인천광역시 ○○구 소재 빌라의 조경관리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전지작업을 위하여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무를 자르던 중 균형을 잃고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재해임.



[사진 1] 재해상황도



[사진 2] 재해발생 현장



[사진 3] 기인물(고소작업대)

① 사고발생원인

- 작업대 전면부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단부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나 안전난간 등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
-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,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미지급하고,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작업 중 떨어짐

② 동종사고 예방대책

- 작업대 전면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의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.
 - ※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급 및 관리 감독 철저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, 안전모를 지급하고,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함.